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한 최악의 경기침체 및 일자리 충격에 직면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고용분야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청년층의 취업문제가 심각하고, 소상공인·영세상인 등 지역주민의 사용료·대부료가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경 등을 통해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코로나19 등 재난에 따라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역 일자리창출 기업에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부담을 완화(안 제9조, 제13조, 제17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

- 1) 청년층 고용비율이 높고, 임금·일생활균형 등 정부시책에 부합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지원하여 청년 취업문제의 개선이 기대됨

- 2) 일자리창출 기업을 일반입찰로 유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 등의 지원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지역 여건 및 자치단체 귀책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감경 규정이 없음에 따라 이를 개선(안 제17조, 제35조)

- 1)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역경제 조기 극복 지원이 필요함
- 2) 자치단체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의 연장 뿐만 아니라 사용료·대부료 경감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납부방법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4조)

- 1)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확대하여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
- 2)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위한 입찰 시 사용료의 체감한도를 20%까지 낮추어 국유재산 및 일반재산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3)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조정한도 상한을 삭제하여 사용료·대부료 급등시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

라.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사용 전이 미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던 것을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

안하여 납부를 미루거나 연체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32조, 제80조)

마. 기타 불명확·불합리한 규정 정비(안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9조의 2, 제21조, 제29조, 48조의3, 제50조, 제57조, 제58조, 제81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0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법 제7조제2항 단서”를 “법 제7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9조제1항제13호·제19호”를 “제29조제1항제13호·제19호(입찰의 방법으로 대부받은 자 포함)”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공작물”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작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관리위탁수입”을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23호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4호(종전의 제23호) 중 “제22호까지”를 “제23호까지”로 한다.

23.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제14조제7항 중 “4회”를 “6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어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

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중 “50”을 “20”으로 한다.

제16조 중 “사용·수익허가기간 중”을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로, “경우에는 변경”을 “경우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 받은 경우에는 변경 또는 감경”으로,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조정”으로 한다.

제1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단,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인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의 경우

제17조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제1호 외”를 “제6항제4호”로 한다.

1. 제6항제1호의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2. 제6항제2호·제3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명입찰”을 “제한입찰 및 지명입찰”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따라”를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의 사용료는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⑤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의 방법은 제13조를 준용하고,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29조제1항에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7항으로 한다.

26.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27. 법 제3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제30조제1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입찰의 방법으로 대부하는 경우 포함)”로 한다.

제31조의2제2호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begin{array}{l}
 \text{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
 \text{대부료(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
 \text{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 \\
 \text{용한 경우 및 이 법 또는 다} \times \frac{\text{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text{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
 \text{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 \\
 \text{경 받은 경우에는 변경 및 감} \\
 \text{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
 \end{array}$$

제32조제2항 중 “4회”를 “6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어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대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

위에서 미루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중 “경우에는 변경”을 “경우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 받은 경우에는 변경 또는 감경”으로,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조정”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4호 중 “제29조제1항제23호”를 “제29조제1항제14호 · 제15호 또는 제2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단,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9조제1항제19호(입찰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 포함) · 제20호 · 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인 경우

제35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29조제1항제19호 · 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을 “제2항

제2호·제3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 외”를 “제2항 각 호외”로 하며, 같은 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부료 전액

제48조의3제3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대장가격) 공유재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나 공유재산을 이미 취득하였으나 아직 대장가격이 없는 경우에 그 가격은 법 제46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하, “대장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취득에 든 수수료 및 설치비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제5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耐用期間),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를 “정하는 작성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을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에 다음”으로, “연체료율”을 “비율”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어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료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붙일 수 있다.

제81조제1항 본문 중 “재산을”을 “재산 또는 물품을”로, “제14조 및 제31조”를 “제14조·제31조 및 제74조”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고, 집무실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방감이 있는 환경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료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용·수익허가 받거나 갹신된 사용·수익허가 및 체결되거나 갹신된 대부계약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2. <u>법 제7조제2항 단서</u> 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수 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 는 경우	2. <u>법 제7조제2항제1호</u> ----- ----- -----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u>제29조제1항제13호·제19호</u> 또는 제23호에 따라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 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 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 하는 경우	5. <u>제29조제1항제13호·제19호</u> (입찰의 방법으로 대부받은 자 포함) ----- ----- -----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 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 (空中)·지상·지하에 <u>공작물</u> 을 설치하는 경우	9. ----- ----- ----- ----- ----- <u>행정안</u> <u>전부장관이 정하는 공작물</u> --- -----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 ·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 ----- ----- ----- -----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填)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처분의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군 및 자치구에 그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귀속시키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관리위탁의 경우: 관리위탁수입의 100분의 20

- ## 5. (생략)

- ② (생략)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① · ② (생략)

-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
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신 설>

④ · ⑤ (생략)

제14조(사용료) ① ~ ⑥ (생략)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
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
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
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23.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사용·수
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4. ----- 제23호까지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6월

⑧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

⑧ (생 략) 제15조(사용료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을 위한 일반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3회차 일반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u>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u>보다 100	<u>난에 따른 피해를 입어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u>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15조(사용료 체감) ----- ----- ----- ----- ----- 20 ----- ----- ----- ----- -----. 제16조(사용료의 조정) ----- ----- ---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 ----- ----- ----- 경우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
---	---

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⑤ (생략)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경 받은 경우에는 변경 또는 감경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조정-----
-----.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단,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인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신 설>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 제19조의2(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u>지명입찰</u>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2. (생략)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	4. 제13조제3항제8호의 경우 ⑦ ----- ----- ----- ----- ----- -----. 1. 제6항제1호의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2. 제6항제2호·제3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3. 제6항제4호----- -- 제19조의2(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제한입찰 및 지명입찰</u>----- ----- -----. 1. 2. (현행과 같음)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행정
---	---

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
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
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
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
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
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신 설>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
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
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
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
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
다.

⑥ 제5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의 사용료는 제1
4조, 제16조, 제17조 및 법 제24
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⑤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3
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사용·수
익허가의 방법은 제13조를 준용
하고,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부터 제17조까
지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한
다.

⑥ ----- 따른 이용
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

--.

⑦ 제6항-----

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 2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②·③ (생략)

④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

-----.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

-----.

1. ~ 25. (현행과 같음)

26.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27. 법 제3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삭제>

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
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
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
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
려는 자가 신축 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⑤ ~ ⑦ (생략)

⑧ (생략)

제30조(대부기간) ① 법 제31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
부할 수 있다.

1. 2. (생략)

3. 제2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장 또는 연구시설 등을 유
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5. (생략)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

④ ~ ⑥ (현행 제5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⑦ (현행 제8항과 같음)

제30조(대부기간)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 경우
(입찰의 방법으로 대부하는
경우 포함)

4. 5.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

부료)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생략)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부료) -----

-----.

-----.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6회 -----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생 략)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④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어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대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4조(대부료의 조정) -----

----- 경우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 받은 경우에는 변경 또는 감경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조정-----.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4. 제29조제1항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9조제1항제14호·제15호
또는 제23호-----

②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단,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9조제1항제19호(입찰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 포함)·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인 경우

③ -----

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신 설>

1.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

제48조의3(수탁재산의 관리) ①·② (생략)
③ 위탁관리기간, 위탁관리재산의 대부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관리위탁기간”은 “위탁관리기간”으로, “사용·수익”은 “대부”로 본다.

제50조(대장가격) 공유재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나 공유재산을 이미 취득하였으나 아직 대장가격이 없는 경우에 그 가격을 공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1. 제2항제1호의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부료 전액
2. 제2항제2호·제3호의 -----

3. 제2항 각 호외-----
--

제48조의3(수탁재산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5항-----
-----.

-----.

제50조(대장가격) 공유재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나 공유재산을 이미 취득하였으나 아직 대장가격이 없는 경우에 그 가격은 법

유재산 대장에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기록하되, 취득에 든 수수료 및 설치비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금액을 산출한다.

1. 구입한 것: 구입가격
2. 교환한 것: 교환가격
3. 수용한 것: 보상금액
4. 그 밖의 것

가. 토지: 제31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나. 입목(立木)·죽(竹): 시가로 정한 단가에 수목(樹木)의 부피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庭園樹)나 그 밖에 수목의 부피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고려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 건물 및 그 밖의 공작물과 선박 및 그 밖의 동산: 건축비, 제조비 또는 시가를 고려하여 평정한 금액

라.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재산: 납입금액, 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46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하, “대장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취득에 든 수수료 및 설치비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마.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재
산: 해당 수익권 취득 당시
를 기준으로 재산별로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제57조(물품 수급관리계획)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
7조제1항에 따라 물품 수급관리
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물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수
(定數) 관리대상 물품(이하 “정
수관리대상물품”이라 한다)으
로 한다.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
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
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행정안전
부장관이 대상 물품의 선정, 정
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耐
用期間),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80조(연체료의 징수) ① 지방자

제57조(물품 수급관리계획)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작성
지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장-----
-----.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①

----- 정하는 작성지침을 준
수해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0조(연체료의 징수) ①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연 락 처	(044) 205 - 3787